

<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>

I. 제도 개요

- '18.12.1.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(이하 '단체실손')과 개인실손의료보험(이하 '개인실손')의 연계를 통해 재직 중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고 퇴직 후 실손의료 보장이 가능

구 분	재 직 중	퇴 직 후
개인실손 중지·재개	단체실손 가입 후 개인실손 중지	개인실손 재개
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	단체실손 가입	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

※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는 단체실손의 임·직원을 대상으로 시행

II. 운영 기준

가. 개인실손 중지/재개

구 분	세 부 기 준
중 지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*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	신청기준 ·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며,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
재 개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
	재개심사 ·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무심사 재개 * 다만, 단체실손 및 개인실손에 모두 미가입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을 초과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음
	재개상품 ·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 재개 *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	재개불가 ·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동시에 해지되므로 재개 불가

나.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

구 분	세 부 기 준
전환대상	· 전환신청 직전 5년간(계속*) 단체실손 가입자 중 개인실손에 가입 가능한 자(65세 이하) *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
신청방법	· 단체실손 종료(퇴직 등)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고,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
전환심사	·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* 전환 *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였거나 10대 중대질환 발병이력(5년)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
전환상품	·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, 보장종목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 적용 * 전환 시 보장종목 추가,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

Ⅲ. 가입시 유의사항

가. 개인실손 가입자도 단체보험(실손형, 비실손형)에 가입 가능

- 기존에 개인실손을 가입한 계약자도 단체보험(실손형, 비실손형)에 가입이 가능하고,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가입시에는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비실손형 단체보험 : 사망, 암 등 위험 발생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(예:사망시 1억원)

나. 단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절차를 상세히 안내

- 보험금 청구(사고접수)는 당사 소정양식의 청구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가까운 NH농협영업점에 제출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.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(1644-9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‘개인실손 중지제도’는 ‘해지’가 아닌 ‘중지’입니다

- 일부 보험회사가 개인실손 중지제도 안내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과 동일*하다고 하거나 ‘중지’가 아니라 ‘해지’된다고 잘못 안내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
* 해지 후 실손보험 재가입시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지만, 재개시에는 무심사(보장범위 확대 요청시는 심사)로 재개되므로 ‘해지후 재가입’과 명백히 다른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